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22 발의연월일: 2025. 4. 10.

발 의 자:문진석・이건태・이재관

김교흥 • 이연희 • 이정문

김동아 · 장경태 · 맹성규

전용기 · 한준호 · 조인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기준에 맞지 않는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설치, 조류충돌 대응 미비 등 국 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부실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음.

현행 항공장애물 관리 지침에 따라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시설물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부서지기 쉬운 소재로 설치되어야 했으나,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여수·광주·제주·포항경주·김해·사천공항에 설치된 방위각제공시설은 콘크리트 소재로 되어 있어 유사시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대량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임.

또한 조류 충돌(Bird-Strike)을 예방하기 위해 인력 배치, 퇴치 활동 등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활동만 이뤄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유사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의2 및 제56 조의4, 제56조의5 신설 등).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unway end safety area)"이란 접근활주로의 시단 앞쪽에 착륙하거나 종단을 지나쳐 버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국제규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 대칭으로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설설치기준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정한 바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항공기의 이륙·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 2.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로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그 연접구역(활주로 종단안전구역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구역을 말한다)에 설치되어야 하는 장비 및 시설은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며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할 것

제5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6조의4(조류 충돌사고 예방 전담 인력 및 장비 운용) ① 공항운영 자는 조류 충돌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진다.
 - ② 공항운영자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 인력 및 조명탄 등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담 인력의 수는 공항 운영시간, 운영하는 활주로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5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6조의5(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①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위험에 대한 평가를 매 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절차·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3의2.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u>
	unway end safety area)"o]
	란 접근활주로의 시단 앞쪽에
	착륙하거나 종단을 지나쳐 버
	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국제규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 대칭으로 착륙대 종
	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
	<u>한다.</u>
14. ~ 20. (생 략)	14. ~ 20. (현행과 같음)
제24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제24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의 설치기준 등) (생 략)	의 설치기준 등)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신 설></u>	② 시설설치기준이 「국제민간
	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
	속서(附屬書)에서 정한 바에 부
	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
	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항 공기의 이륙·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 2.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로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그 연접구역(활주로 종단안전구역으로부터 국토통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구역을 말한다)에 설치되어야하는 장비 및 시설은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하며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할 것

제56조의4(조류 충돌사고 예방 전담 인력 및 장비 운용) ① 공항운영자는 조류 충돌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공항운영자는 조류 충돌 예

 방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 인력

 및 조명탄 등 장비를 운용하여

<신 설>

<신 설>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 인력의 수는 공항 운영시간, 운영하는 활주로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제56조의5(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①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
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항
공기와 조류의 충돌위험에 대
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절차·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